|  |
| --- |
| 사 업 명 |
| (19) 조기재취업수당(1280-351) |

1. 사업 코드 정보

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구분 | 기금 | 소관 | 실국(기관) | 계정 | 분야 | 부문 |
| 코드 | 고용보험기금 | 고용노동부 | 고용서비스정책관 |  | 080 | 08D |
| 명칭 | 사회복지 | 고용 |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구분 | 프로그램 | 단위사업 | 세부사업 |
| 코드 | 1200 | 1280 | 351 |
| 명칭 | 고용안전망확충 | 실업급여 | 조기재취업수당 |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직접 | 출자 | 출연 | 보조 | 융자 | 국고보조율(%) | 융자율 (%) |
| ◌ |  |  |  |  |  |  |

3. 지출계획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사업명 | 2022년 결산 | 2023년 계획 | | 2024년 | | 증감 |  |
| 당초(A) | 수정 | 정부안 | 확정(B) | (B-A) | (B-A)/ A |
| 조기재취업수당 | 468,018 | 386,659 | 470,260 | 482,872 | 463,837 | 77,178 | 20.0 |

4. 사업목적

-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조기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등을 지급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조기 재취업 촉진   
 ▴(조기재취업수당)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/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잔여 소정급여의 1/2 지급

\* 만 65세 이상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/2 이상을 남기고,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잔여 소정급여의 1/2 지급▴(직업능력개발수당)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훈련참여기간에 1일 7,530원 지급  
▴(광역구직활동비)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등 지급  
▴(이주비)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화물운송 실비 등 지급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: 고용보험법 제64조부터 제69조

**고용보험법 제64조(조기재취업 수당)**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(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)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.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 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(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)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.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**고용보험법 제65조(직업능력개발 수당)** ①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.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③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지급 요건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인력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**고용보험법 제66조(광역 구직활동비)** ①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. ②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제1항의 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,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고용보험법 제67조(이주비)** ①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.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,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

②추진경위 - ‘92.3월 한국노동연구원에 「고용보험연구기획단」발족

- ‘93.4월 「고용보험실무작업반」구성 및 ’95년 시행방침 확정

- ‘93.12월 고용보험법 제정․공포

- ‘95.7월 고용보험사업(실업급여 등) 시행 이후 ’96년부터 지급

6. 주요내용

①사업규모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
- 사업기간 : 1995. 7. 1. ~ 계속

-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(예산액기준,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)

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연도 | 2020 | 2021 | 2022 | 2023 | 2024 |
| 사업비 | 337,779 | 465,097 | 524,934 | 470,260 | 463,837 |

- 기타: 해당없음

②사업추진체계
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  
- 사업시행주체 : 고용노동부(고용센터)  
- 사업 수혜자 : 구직급여 수혜자  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․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: 해당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1. 조기재취업수당 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|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|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제출 | | 고용보험법 제64조(조기재취업 수당) | |  |  | | | 지급요건 확인 | | 고용보험법 제64조(조기재취업 수당) | |  |  | | |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| | 고용보험법 제75조(조기재취업 수당) | | 수급자 → 고용센터  고용센터 → 수급자  고용센터 → 수급자 |   2. 직업능력개발수당, 광역구직활동비, 이주비 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|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| 수당 신청서 제출 | | 고용보험법 제65조~제67조(직업능력개발 수당,  광역 구직활동비, 이주비) | |  |  | | | 지급요건 확인 (서류심사, 심의위원회 등 개최) | | 고용보험법 제65조~제67조(직업능력개발 수당,  광역 구직활동비, 이주비) | |  |  | | | 수당 지급 | | 고용보험법 제65조~제67조(직업능력개발 수당,  광역 구직활동비, 이주비) | | 수급자 → 고용센터  고용센터 → 수급자  고용센터 → 수급자 | |